



20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6. 10. 25.(화) 제2차 본회의

부 의 안 건



예 천 군

목 차

종 합 민 원 과

- 예천군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환 경 관 리 과

-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6

건 설 교 통 과

-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 예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건 축 도 시 과

- 예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 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1
- 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75

농업기술센터

-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출자 : 예천군수

1.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사업의 근거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었으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지적재조사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 있어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 조항을 삭제하여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포함된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사업 근거 법령의 제명이 개정되어 반영(안 제2조)

- 지적재조사사업의 근거 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주민의 권리를 규제하는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 조항을 삭제(안 제2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한다)이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 ----- -----.
제23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1.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u> <u>2.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u> <u>3.다른 법률의 규정에 인가 · 허가 · 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u>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출자 : 예천군수

1. 개정이유

- 2016년 예천군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 및 불필요한 서식을 정비하여 사업자 및 주민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자 간의 위탁계약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계약의 자유 제한)이므로 해당 조문 삭제
-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규정 삭제

나. 불필요한 서식 정비(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 별표 4)

- 상위법과 중복되는 서식 삭제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사양 정비

현행

【별표 4】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예천군 문장 종량제봉투(10ℓ) - 일반용 - 1.~3.(생략) 예천군수 ※ 문의사항 : 환경관리과 (650-6191) 읍 총무담당 (650-6619) 면 총무담당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색상 : 노란색)

개정

【별표 4】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예천군 문장 종량제봉투(10ℓ) - 음식물류 폐기물 - 1.~3. (현행과 같음) 예천군수 ※ 문의사항 : 환경관리과 (650-6196) 읍 총무담당 (650-6601) 면 총무담당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색상 : 노란색)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을 “발생억제방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삭제한다.

제17조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호 중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제17조제4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 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 4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5호 중 “별지 제1호의 서식”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을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 사양(제12조 관련)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예천군 문장

종량제봉투(10ℓ)

- 음식물류 폐기물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 천 군 수

※ 문의사항 : 환경관리과 (650-6196)

읍 총무담당 (650-6601)

면 총무담당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색상 : 노란색)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⑤ (생략)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u>발생억제방법</u> ,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발생억제 방법 ----- -----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생략)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 ⑤ (생략) ⑥ <u>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u>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현행	개정안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u>별지 제1호서식</u>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위탁 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u>이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u> 3.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u>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u>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 1.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 ----- ----- ----- -----. 2. ----- ----- ----- ----- ----- ----- <u><후단 삭제></u> 3. ----- ----- ----- <u>내용</u>----- ----- -----.

현행	개정안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u>별지 제2호서식</u>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u>별지 제3호서식</u>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u>별지 제1호 서식</u>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6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 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라. (생략)	4.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 -----. 5.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 ----- ----- ----- ----- -----. 가~라.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시에만 해당)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생략)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 -----. 1.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등----- ----- ----- ----- -----. 2. (현행과 같음)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폐지이유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음.
-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환경부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된 등록규제를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출자 : 예천군수

1. 개정이유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요금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마련(안 제17조)

-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하는 경우와 교부할 수 없는 경우로 산정기준을 이원화
 - 교부하는 경우 :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나. 공영주차장 요금 개정(안 제3조제1항 별표 1)

- 1일 1회 주차요금표 삭제, 주차요금 상한선 삭제 등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 (생략)							1. (생략)						
2. 1일 1회 주차요금							2. (삭제)						
버스 및 승합	정기운행차 (대당월액)				승용차 및 화물	기타							
36인승 이 상	36인승 미 만	대형 버스 (36인승 이상)	대형 버스 (36인승 미만)	택시									
4,000원	2,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2,000원	1,000원							
비고							비고						
1.~3. (생략)							1.~3. (생략)						
4. <u>군수는 주차장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상기 금액(기준요금)을 상한선으로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u>							4. <u>1구획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u>						
5. (생략)							5. (생략)						

3. 개정조례안

- 불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2 서식”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3 서식”을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4 서식”을 “별표 4”로 한다.

제17조를 제17조의2로 하고, 제17조의2제2항 중 “별표 7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며, “별표 8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3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u>별표 2 서식</u> 에 따른다.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 ----- ----- ----- ----- ----- <u>별표 2</u> 에 따른다.
1.~4. (생략)	1.~4. (생략)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u>별표 3 서식</u> 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 <u>별표 3</u> ----- ----- -----.
③ (생략)	③ (생략)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 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u>별표 4 서식</u> 에 따른다.	④ ----- ----- <u>별표 4</u> -----.

현행	개정안
<u>제17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u>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 노외무상사용증은 <u>별표 7서식</u>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u>별표 8서식</u>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u>제17조의2(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u> ① (생략) ② ----- -----<u>별지 제1호 서식</u>----- -----<u>별지 제2호 서식</u>-----.
<u><신설></u>	<u>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u>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3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 시간제 주차요금

급지구분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	30분 초과 15분 마다	월정기주차요금표	
			주 간	야 간
1급지	500원	250원	75,000원	56,000원
2급지	200원	100원	20,000원	22,000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구분
 가. 1급지 : 개별공시지가 1㎡당 47,300원 이상
 나. 2급지 : 개별공시지가 1㎡당 47,300원 미만
4.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
5. 군수는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다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16조제1항 관련)	
7cm	10cm
NO.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예 천 군 수 ㉠	

~ 비 고 ~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주 의 사 항 1. 이 공영주차장 사용증은 예천군수가 발행한 것임. 2. 앞면표시 중 건축물의 위치, 사용기간, 이용주차장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3. 이 공영주차장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 4. 이 주차장 사용증은 지정된 주차장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illegible]

예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측량법」이 폐지되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예천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인용 법 조문 변경(안 제1조)

- 당초 :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변경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 -----.

예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천 군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개정사항과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내의 유치 업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수정 : 예천 군계획 조례→ 예천군 군계획 조례

나.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안 제54조)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허용 건축행위 완화

다. 기타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안 제55조)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폐율 완화(20% → 30%)

라. 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완화(안 제59조의2)

-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산지유통시설 설치시 건폐율 완화(20% → 60%)
- 종전 도시계획법상 산업단지 내 공장의 건폐율 80%까지 완화
- 계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건폐율 30% ~ 50%까지 완화

마.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야영장 시설 입지 기준 마련(안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2, 별표 14부터 별표 18까지, 별표 20, 별표 22)

- 입지 가능지역 : 위 별표와 같음
-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따른 입지가능지역 : 안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별표 19

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빵·떡 제조업 일부허용(안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사. 도청이전 신도시 내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안 별표 6)

- 준주거지역 내 1천㎡ 이상의 판매시설 입지 제한 폐지

아.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지구내 일반음식점 등 입지 완화(안 별표 18)

- 농촌융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자.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 완화(안 별표 19)

-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유기농화장품·천연식물보호제·유기농어업제·천연 비누 및 세제·천연염료를 사용하는 섬유제조시설 등의 입지 일부 완화

3. 개정조례안

- 불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8조, 제79조, 제84조, 제93조
-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1단계 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행지침」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 군계획 조례”를 “예천군 군계획 조례”로 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9조”를 “영 제7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7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에 한정한다.

제55조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제56조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57조 중 “영 제84조제5항제1호”를 “영 제84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57조의2 중 “영 제84조제5항제2호”를 “영 제84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3호”를 “영 제84조제6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4조제8항”을 “영 제84조제9항”로 한다.

제59조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를 “영 제84조제6항제4호”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5호”를 “영 제84조제6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를 “부지를 확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④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6조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별표 12, 별표 14부터 별표 20까지,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 (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군수가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별표 3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 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 가스 충전소·저장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가목과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하지 않은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세목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업종 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에 따른다.

- (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 (2) 봉제의복 제조업(141)
- (3) 편조의복 제조업(143)
- (4)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263)
- (5)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10794)
- (6) 세탁업(9691)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사. 제1호 다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 거리 6미터를 말한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만
해당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물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
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어업·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 (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조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1) 별표 18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 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 (마) 동·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으로서 별표 24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4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 자목(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예천 군계획 조례</u> 제54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55조(기타 용도지역·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u>예천군 군계획 조례</u> 제54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7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에 한정한다. 제55조(기타 용도지역·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 ----- ----- ---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 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 제5항----- ----- ----- -----
제57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 ----- ----- ----- -----
제57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 ----- ----- ----- ----- ----- -----

현행	개정안
제58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58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 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 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축물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 ----- ----- ----- ----- ----- ----- -----.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9항 ----- ----- ----- ----- -----
제5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은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 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① 영 제84조제6항제5호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8항-----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③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그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 ----- ----- ----- ----- ----- <u>부지를 확장하여</u> ----- ----- ----- ----- ----- -----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④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 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u><신설></u>	⑤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 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 지역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 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 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 제7항----- ----- ----- ----- -----

현행	개정안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제6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제6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제6항----- ----- ----- -----

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출자 : 예천군수

1. 개정이유

-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법률 제9051호, 2008.03.28.)되고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에 대한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규정 등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변경(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9조, 제7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폐지(2008.03.28. 법률 제9051호)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기반 시설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제5조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u>예천군기반시설 특별회계</u>(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 제2조(정의) ----- -----.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에 따른 ----- -----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 -----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2. (생 략)	제4조(세입) ----- -----.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2. (현행과 같음)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 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세출) -----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 -----. -----.

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내 설치된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동구의 점용·사용자가 공동구를 점용·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나. 공동구 점용·사용료, 관리비 부과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7조)

- 점용료는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면적 비율로 정함
- 공동구 유지관리업무를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해 징수

라.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4조)

-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를 구성함(비용분담, 유지관리계획, 점용·사용허가 등)
- 위원장(부군수)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 단 시·군 공동으로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협의하여 결정 함
- 위원구성 : 공동구 관리 공무원(예천군, 안동시), 소방서 소속 공무원, 점용자, 전문가
- 성별구성 제한 : 특정성비 60% 초과금지, 단 전문인력 부족시 예외
- 회의개최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 「예천 군계획 조례」 제10조의2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300,05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반영(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규정)

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공동구에 수용 될 상·하수도관, 전기통신 회선설비, 전선로, 통신선로, 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 등의 관리자를 말한다.
3. “공동구 본체”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또는 프리캐스트 구조물을 말한다.
4. “점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영구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일시점용(5년 이내)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부대시설”이란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그 밖의 설비 등을 말한다.
7. “부속시설”이란 점용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물로서 점용시설의 지지물 및 보완 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공동구 설치비용)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률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따른다.

④ 군수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 착공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잔액은 공동구 설치 준공과 동시에 완납하고 점용시설 수용 시에 정산 처리한다.

제4조(점용·사용허가) ①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 공동구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허가할 때에는 공동구 내 수용되어 있는 시설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사용료 납부) ① 제4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총비용에 대한 점용 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제6조(공동구의 관리·운영 구분) ① 공동구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은 점용시설물 별로 각 점용자가 유지·관리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시설의 전담기구 및 전담인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구의 관리·운영비 등) ① 군수는 공동구 관리·운영을 위해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조정 부과한다.

1. 조명·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등

② 군수는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 전자기술부문 전문분야 관리업체
4. 공동구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군수가 공동구의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제8조(징수) ①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사용료 및 관리·운영비 등의 징수는 군수가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 수용될 시설의 공사 착수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최초 연도 분은 사용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하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허가 시에 징수한다.

④ 제7조에 따른 관리비는 연 2회 분할하여 징수한다.

⑤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공동구관리협의회 설치 등) ①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구 설치비용 및 공동구 관리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구 점용·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둘 이상의 시·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직원
4. 공동구 점용자(또는 예정자)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점용기관 소속직원의 임기는 공동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할 때까지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시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원이 요구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구 관리 업무담당, 서기는 공동구 관리 업무 주무관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직, 성명
3. 협의회 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

③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처리기간	
						30일	
①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② 점용(사용) 목적·용도							
③ 점용(사용)구간							
④ 점용(사용)장소			⑤ 점용(사용) 기간		년 (월 년 월	일부터 일간) 일까지	
⑥ 점용(사용)물 구조·재질							
⑦ 점용(사용)공사 실시방법							
⑧ 공사기간							
⑨ 도로종류				노선명			
⑩ 점용(사용) 시설물의 종류			규격		면적·길이		
「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공사 설계도면 1부. 2. 공사부위 또는 인근에 타 점용(사용)시설물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3. 사업시행자가 점용(사용)시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수수료	없음
근거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구 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작성방법 ①란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어 넣습니다. ③란은 평면도 및 횡단면도에 공동구 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사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m^2)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공동구명을 적어 넣습니다. ⑤란은 점용(사용)기간을 적어 넣습니다. ⑥란은 점용(사용)목적물의 재질 및 구조를 적어 넣습니다. ⑦란은 점용(사용)목적물이 벽체 또는 바닥, 천장 등에 설치되는 부위를 적어 넣습니다. ⑨란은 일반국도·광역시도·군도·도시계획도로로 구분 적어 넣습니다. ⑩란의 점용(사용)시설물의 종류에는 전선로·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송유관·열수송관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2$·$○○m$로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공동구점용(사용) 허가증 (제4조 관련)					
제 호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점용(사용)목적·용도					
점용(사용)구간					
점용(사용)장소					
점용(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간) 년 월 일까지			
점용(사용)물의 구조·재질					
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도로종류				노선명	
점용(사용)시설물의 종류			규격	면적·길이	
허가조건					
「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공동구점용(사용) 허가대장 (제4조 관련)						
범 인 명 :						
일련번호		허가번호		허가일자		
도로종류 및 노선번호		점용(사용) 장 소		피허가자 주소(전화)		
점용(사용) 목적·용도		점용(사용) 면적(길이)		대 표 자		
점용(사용) 기 간		점용(사용) 시설물종류		점용(사용) 공사실시 방 법		
점용료 또는 사용료	원		점용료(사용) 부과징수일	부과일 : 징수일 :		
변 동 사 항			사후관리 계획			
일 자	구 분	변동내용				
			허가조건 및 이행상황	허가조건	이행상황	
담 당 자	담 당	과 장				

(뒤쪽)

위 치 도	전 경 사 진
평 면 도	기 타 참 고 사 항

【별지 제4호 서식】

공동구관리 협의회 소집 요구서 (제13조 관련)

○ 건 명 :

위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자 공동구관리협의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1. 현황설명서 :

2. 협의계획서

○ 시설개선계획 :

○ 소요예산 :

○ 집행계획 :

○ 기타 :

○ 요구자 : (서명)

○ 동의자 : (서명)

○ 동의자 : (서명)

○ 동의자 : (서명)

○ 동의자 : (서명)

공동구관리협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동구관리협의회 심의 의결서 (제14조 관련)

의안번호	제 호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	장 소	
의 안			
심의결과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내용		

구 분	성 명	의 건		서 명	구 분	성 명	의 건		서 명
		가	부				가	부	
위원장					위 원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참고자료〉

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도청이전신도시내 공동구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비용

2) 발생요인

○ 관리·운영비 : 300,050천 원/년

수용기관	수용시설	점용면적율(%)	관리·운영비(천원)	비 고
합 계		100.00	300,050	
전 력	전 기	8.83	26,494	
통 신	통신시설	13.58	40,747	
예천군	상 수 도	77.59	232,809	

- 산출근거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합리화 방안 수립연구용역 p47

3)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7조에 따른 점용면적 대비 관리·운영비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합리화 방안 수립연구용역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합계
세입	관리·운영비		300,050	300,050	300,050	300,050	1,200,200
	소계(a)		300,050	300,050	300,050	300,050	1,200,200
세출	관리·운영비		400,050	300,050	400,050	300,050	1,400,200
	소계(b)		400,050	300,050	400,050	300,050	1,400,200
□ 총 비용(a-b)		0	-100,000	0	-100,000	0	-200,000

○ 공동구 정밀검사(2년 마다) 비용 발생 : 200,000천 원

5)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0	332,809	232,809	332,809	232,809	1,131,236
민간		0	67,241	67,241	67,241	67,241	268,964
기타							
합계		0	400,050	300,050	400,050	300,050	1,400,200

○ 수용기관(한전, KT 등) 점용료 : 67,241천원

○ 매년 군비 (수도 등) 조달 : 232,809천원

○ 2년마다 정밀검사 비용 : 200,000천원

6) 부대의견 : 없음

7) 작성자 : 건축도시과 지방시설서기 황재호

2. 비용추계 상세내역

○ 매년 유지관리 비용 : 300,050천원

○ 정밀검사 비용(2년마다) : 100,000천원

○ 공동구 유지관리비 산정

- 공동구의 총 유지관리비 산정

- 경북도청이전신도시내에 조성되는 공동구의 총 연장은 3,321m이며 유지관리비는 501,000천원 ~ 530,000천원으로 산정됨
- 안동시내에 조성되어지는 공동구의 총 연장은 1,388m이며 유지관리비는 209,390천원 ~ 221,510천원으로 산정됨
- 예천군내에 조성되어지는 공동구의 총 연장은 1,933m이며 유지관리비는 291,610천원 ~ 308,490천원으로 산정됨

<표 4-24>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조성 공동구 유지관리비 산정

구 분	연장(m)	유지관리비 산정(천원)		
		1안	2안	평균
소 계	3,321	530,000	501,000	515,500.00
안동시	1,388	221,510	209,390	215,450.00
예천군	1,933	308,490	291,610	300,050.00

3) 생태하천

○ 단계별 인계·인수 물량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생태하천의 조성 규모는 123,767㎡
- 1단계 준공완료 단위시설
- 안동시 신규 조성 규모는 65,350㎡
- 예천군 신규 조성 규모는 58,417㎡

<표 4-25> 생태하천의 단계별 인계·인수 물량

구 분	총 합	1단계	2단계	3단계
소 계	123,767㎡	123,767㎡	1단계 준공완료 단위시설	
안 동 시	65,350㎡	65,350㎡		
예 천 군	58,417㎡	58,417㎡		

○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산정 원단위

- 소하천 유지관리비 원단위는 시 기준 ㎡당 2,187,060원, 군 기준 ㎡당 2,360, 전국기준 ㎡당 300원, 평균 ㎡당 729,907원으로 산정하여 적용함
- 소하천과 관련하여 환경관리과와 치수방재과의 의견이 상이하나,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내에는 송평천 생태하천만이 입지하는 관계로 유지관리비를 일원화 하여 산정하며, 원단위 기준은 도심소하천 비용으로 검토함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출자 : 예천군수

1. 개정이유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지자체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민법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부임대사업소 개소에 따른 위치 명시(안 제2조)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남부분점은 풍양면 삼강로 451-1에 두며 필요시 추가 분점을 둘 수 있다.

나.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 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규정 삭제(안 제13조제4항)

-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남부분점은 풍양면 삼강로 451-1에 두며 필요시 추가 분점을 둘 수 있다.

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u>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예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u>	제2조(위치) <u>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남부분점은 풍 양면 삼강로 451-1에 두며 필요시 추 가 분점을 둘 수 있다.</u>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 ③ (생략)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u>	<u><삭제></u>